

##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중 개정안

###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

- 가.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한 ‘집중이수제(학기 내 집중수업, 주말집중강의)’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
- 나. 『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 사업』 중 2단계 무크선도대학에 지원하고자 마이크로강좌(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최소 주차나 동영상 길이 등의 제한이나 기준 없이 만드는 강좌)를 개발하고 ‘집중이수 수업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
- 다. 이에,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(2017. 5. 8. 개정)에 의거, 학점당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, 교과별로 집중이수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본교 학칙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제11조제4항)

#### 【고등교육법 시행령】

**제11조(수업일수)**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,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학점당 이수시간)**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,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
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